

제 20장 자산손상

적용범위

적용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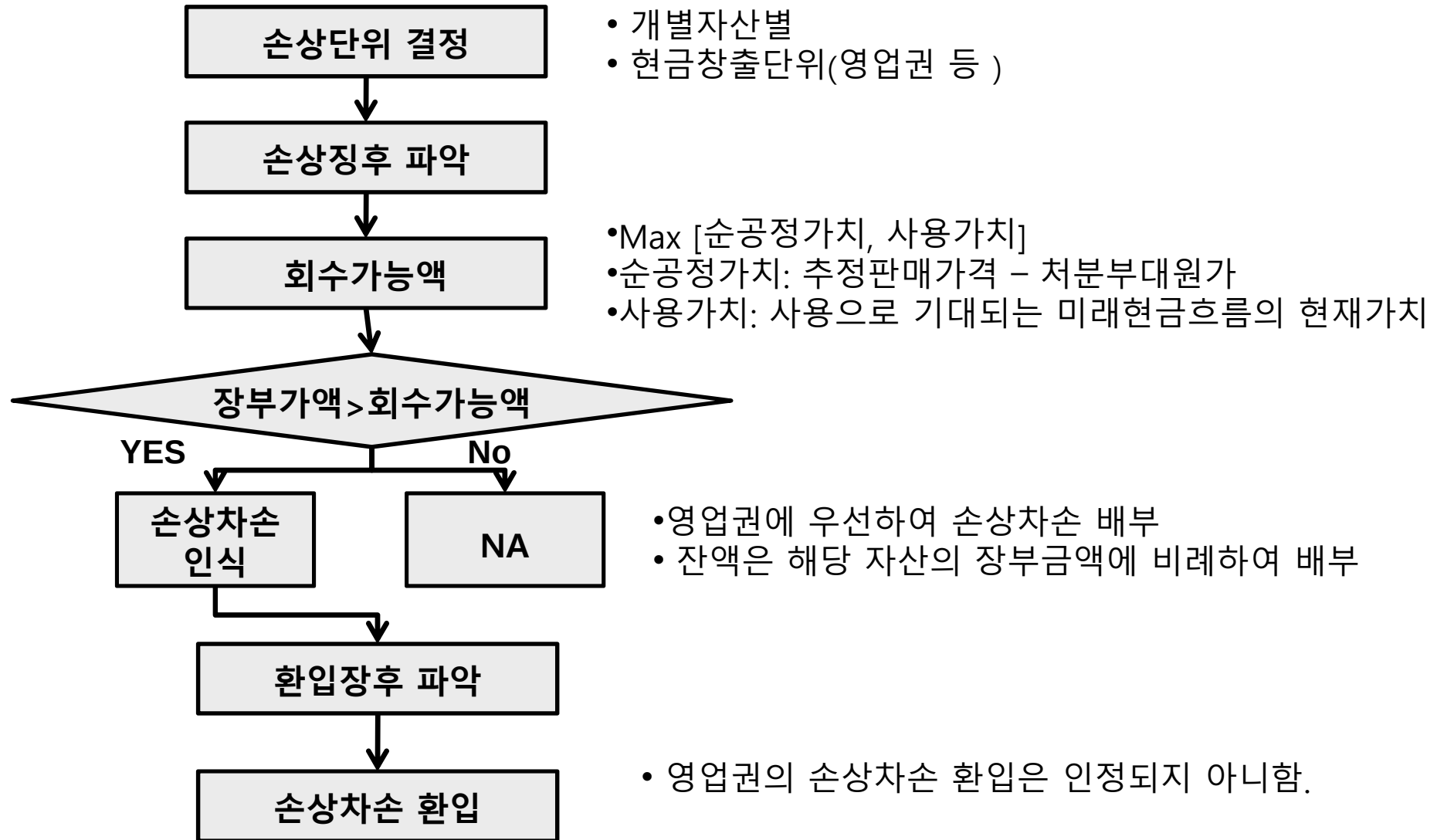
-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에 적용
 - 재평가되는 유형자산 포함
 - 지분법주식의 자산손상에 적용(*)

(*) 단, 손상여부 파악은 제6장 금융자산,부채 제2절 ‘유가증권’ 적용

적용범위 제외

- 금융자산(제 6장 ‘금융자산.금융부채 ‘)
- 재고자산 (제7장 ‘재고자산’)
- 건설형 공사계약 (제16장 ‘수익’)
- 이연법인세자산 (제 22장 ‘법인세회계’)
-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 (제 27장 ‘특수활동’)
-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 (제 28장 ‘중단사업’)

기본개념



손상자산의 식별

손상자산의 식별

- 보고기간말 자산손상 징후 여부 파악하고,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 추정
 -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은 매보고기간말 회수가능액 추정
 - 사용 정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
 - 사용을 중지한 시점부터 상각을 중지
 - 매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가액 추정
-
- * 회수가능액이란? MAX [순공정가치, 사용가치]
 - * 순공정가치란?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
 - * 처분부대원가: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. 단, 금융원가 및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.
 - * 사용가치 :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

손상자산의 식별

손상 징후

1) 외부정보

-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(시간경과,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하락보다 유의적 하락)
- 기업의 경영, 시장, 경제, 법률 환경등이 불리한 영향
- 시장이자율의 중요한 상승으로 사용가치 감소 가능성

2) 내부정보

-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
- 자산의 사용범위, 사용방법의 변경 발생 또는 예상(자산의 유희, 자산의 처분,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분의 중단 및 구조조정계획 등)
-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 미달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
- 해당 자산으로 부터의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계속 지속

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

손상차손인식

-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= 장부금액 > 회수가능액

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

- 인식여부판단
 -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> 미래현금흐름총액 from 사용, 처분
- 손상금액 측정
 - 손상차손 =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> 회수가능가액

손상차손의 인식

- 손상차손은 즉시, 당기손익으로 인식
- 유형자산 재평가손익이 있는 경우, 해당 금액에서 우선 차감 한 후 잔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

손상차손 인식 이후

-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 차감 후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인식

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

회수가능액의 추정

- 개별자산별 추정
 - 개별자산별 추정할 수 없는 경우, 현금창출단위로 추정
 - 순공정가치
 - 독립된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서에서 합의된 가격
 - 활성화거래시장에서의 가격
 - 최선의 정보를 이용한 자산매각가격추정치(최근 유사거래결과 조정, 추정)
 - 사용가치
 - + 자산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
 - 자산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출
 - + 처분 시 순 현금흐름
- 미래현금흐름 추정
할인율

개별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– 사례

사례 1. Micro사는 플라스틱 부품의 제조를 위해 S기계를 사용하고 있음. 이 부품의 일부는 회사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며, 나머지는 제3자에게 판매됨. 지난 2년간 98%이상의 S기계로부터 제조된 부품이 외부에 판매되었음. 2004년 10월 1일, 경쟁사는 회사가 대응하기에 어려운 저렴한 가격에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,판매하기 시작하였음. 회사는 향후 3년간 40%-50%의 판매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. 회사는 또한 아래와 같은 추정을 하였음.

추정 당시의 S기계의 장부금액: 35,000

S기계와 관련된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차액: 17,000

동 기계는 현재 20년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으며, 잔존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됨.

중고시장에서의 S기계의 가치는 12,000 이며, 처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직접비용은 3,000임.

자산의 잔존 내용 연수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총액은 **15,000으로 추정되었으며**,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9,700으로 추정됨 (최종 처분가치를 포함)

현재 동 자산의 잔존가액은 1,200으로 추정되었음.

Q1- 손상차손금액은?

Q2- 손상차손의 배부?

Q3- 손상차손 인식 후 감가상각비용의 계산?

개별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– 사례

Q1

1단계: 인식여부 판단: **장부금액 > 미래현금흐름총액**

장부금액 35,000 > Max [15,000, 9700] 인식해야 함.

2단계 : 회수가능액 결정 : **Max[사용가치, 순공정가치]**

사용가치	9,700
순공정가치 (12,000-3,000)	9,000
손상차손 = 장부금액 (35,000) - 회수가능가액 (9,700)=	25,300

Q2. 손상차손 25,300의 배부

재평가차액(자본)의 감소	17,000
당기 손익	8,300

Q3. 손상차손 인식 후 감가상각비의 계산

장부금액	9,700
잔존가액	(1,200)
상각대상 장부금액	8,500
연 상각액 (8,500 / 5 yrs)	1,700

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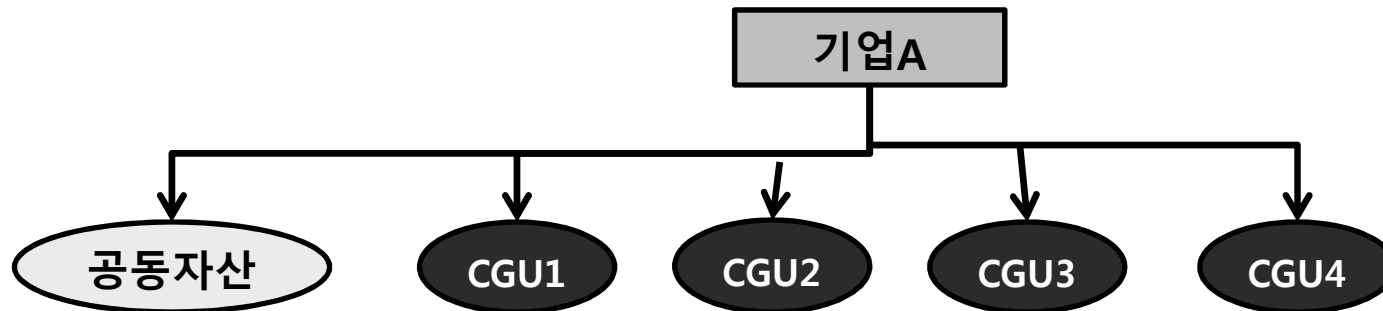
영업권의 손상검사

- 개별적으로 처분될 수 없으며,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함.
→ 현금창출단위로 손상검사가 이루어짐.
- 사업결합목적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
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부
- 회사가 종속기업을 100%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,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
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 조정하여 반영함.

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

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

-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배부
- 합리적으로 배분 가능한 경우: 공동자산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부
- 공동자산의 합리적인 배분할 수 없는 경우 : 공동자산 제외 후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 후 공동자산 배부 될 수 있는 최소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부



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

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

- 장부금액 >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의 손상차손 인식

손상차손의 배부

-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구선 ㄱ 마소
-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부
- 단, 개별자산별로 다음의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음.
 - 순공정가치(결정가능한 경우)
 - 사용가치(결정가능한 경우)
 - 영(0)

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– 사례

- X1년 회사 경영진은 해당 CGU의 회수가능가액을 900으로 추정함. CGU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 손상차손을 배부

	장부금액	순공정가치	사용가치
영업권	300	0	N/A
자산 A	500	550	650
기계장치 A	90	80	N/A
기계장치 B	125	0	N/A
기계장치 C	130	10	N/A
무형자산 A	250	N/A	N/A
CGU 합계 장부금액	1,395		
CGU 회수가능가액	900		
배부할 손상차손	495		

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– 사례

	장부금액	배부 limit	1차 배부액	1차배부 후 장부금액	2차 배부액	2차 배부후 장부금액
영업권	300	0	(300)	0	Nil	0
자산 A	500	650	Nil	500	Nil	500
기계장치 A	90	80	(29) → (10)	80	Nil	80
기계장치 B	125	0	(41)	84	(5)	79
기계장치 C	130	10	(43)	87	(5)	82
무형자산 A	250	0	(82)	168	(9)	159
CGU 합계	1,395		(476)		(19)	900
CGU 회수가능가액	900		495		19	900
배부할 손상차손	495		19		0	

손상차손의 환입

개별자산 손상차손환입

-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제외
- 손상차손 환입의 징후 여부 검토 → 징후가 있는경우, 회수가능액을 추정
- 손상차손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 결정시 사용된 추정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
-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한도
- 재평가손익을 감소시킨 경우, 기타포괄손익을 증가 후 잔여 금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

손상차손환입의 징후

- 외부정보
 - 자산의 시장가치가 유의적으로 증가
 - 기술, 시장, 경제, 법률적 환경의 유리한 변화
 - 미래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자율 하락
- 내부정보
 - 자산 사용범위등의 유리한 유의적 변화
 -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

손상차손의 환입

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환입

-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환입
-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.
 - 회수가능액
 -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, 계상될 장부금액
- 배부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은 다른 자산에 재 배부

공시사항

개별자산유형별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

-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주요 사유 및 상황공시
-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금액
-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환입금액
-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 금액
-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금액

영업권과 현금창출단위와 관련 공시

-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주요 사건과 상황
- 인식한 손상차손금액과 손상차손환입금액
-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

중요하지 않아 공시되지 않은 손상차손 및 환입의 총계

-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에 영향을 받는 주요 자산의 유형
-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과 상황

시행일 및 경과규정

시행일

-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
-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
경과규정

- 종전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것으로 간주
-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음.

•

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1036호	일반기업회계기준 20장	현행 기업회계기준 5호
손상검사 단위		
• 개별자산별로 회수가능액 추정 • 개별자산별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, 현금창출단위로 추정	• K-IFRS와 동일	•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규정이 없음.
영업권의 손상검사		
•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하여 손상검사 실시 • 영업권의 손상배부단위는 영업부문보다 상위로 배분할 수 없음.	•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하여 손상검사 실시 • 영업권의 배부단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.	• 영업권의 배부개념이 없음.

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1036호	일반기업회계기준 20장	현행 기업회계기준 5호
매년 손상검사를 요구하는 자산		
• 영업권 •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•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	•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	• 해당 규정 없음.
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		
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, 손상차손 인식	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총액보다 큰 경우, 인식 • 인식되는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	•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

K-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비교

K-IFRS 1036호	일반기업회계기준 20장	현행 기업회계기준 5호
손상차손 환입		
일반자산은 손상이 발생하기 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(감가상각 반영후)을 한도로 환입	K-IFRS와 동일	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을 한도로 환입
공시사항		
- 손상차손이나 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이나 상황 공시 및 인식 -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- 회수가능액의 산출근거	- 손상차손이나 환입을 발생시킨 주요 사건이나 상황 공시 및 인식 - K-IFRS와 비교하여 공시의 양이 감소	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 공시